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나770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1나7706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264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11. 29.

판결선고 2023. 1. 1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가단264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8. 12. 10. 접수 제976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이홍관, 판사 윤동연

별지